

제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71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7가단11727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피고,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변론 종결 2020. 4. 22

판결 선고 2020. 5. 13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7가단1172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E 대 456.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한다) 중 각 2002 분의 132지분에 관하여 1981 . 9. 29.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 80164호로 접수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라 한다) 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류호중판사 조병대판사 문종철